

※ 출처: 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」

“핀테크기업”이란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이 경우, 해당 기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때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인 경우를 말하며,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 및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- 가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기업
- 나. 「은행업 감독규정」 제49조 각 호,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, 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기업
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
- 라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대리인
- 마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·분석·제공하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
- 바. 금융소비자, 그 밖의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, 그 밖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
- 사.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
  - 1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처리, 전송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
  - 2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

3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중계·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  
아.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각의 업종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

- 1) 전자카드 제조업
- 2)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3)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4)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- 5)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- 6)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
- 7) 자료 처리업
- 8)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
- 9)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- 10) 1)부터 9)까지 규정 외의 업무로서 기타 정보 서비스업,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,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

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각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

- 1) 인공지능
- 2) 빅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
- 3) 사물인터넷
- 4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와 유사한 기술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

카.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

타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